

#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62호
의결 연월일	2003. 7. 15 (제105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7월 7일

제안자 : 조례제정 및  
정비 특별위원장

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
-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장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재능우수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대상에서 삭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함(안 제1조)
-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중 통장의 근속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고 2년제 이상 대학생까지 포함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를 포함(안 제2조)
-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에 준하고,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으로 함(안 제6조)
- 장학금의 지급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8조)

##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” 를 “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에게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3년” 을 “1년” 으로하고, 동항에 “중·고등학생” 을 “고등학생·2년제 이상 대학생” 으로 하며, 제2조제1항제1호중 “재학생” 은 “고등학교 재학생” 으로 하고, 동호 후단에 “대학교 재학생은 이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” 를 신설하고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역발전, 반사회운영, 질서, 환경개선, 선행 및 주민화합 등 유공으로 시장이상 표창을 받는 통장의 자녀

제4조제2항중 “중학생과 고등학생수” 를 “고등학생과 대학생수” 로 한다.

제6조중 “공납금 전액으로” 를 “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” 로 한다.

제8조제3항중 “2년이상” 을 “2년을 초과하여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<u>공납금 전액으로</u> 한다, 다만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장학금액) -----            ---- <u>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</u> -----</p>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           ① ~ ②(생략)            ③같은 학생에게는 자녀장학금을 <u>2년이상</u> 지급할 수 없다.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           ① ~ 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-----<u>2년을 초과하여</u> -----</p>
<p>부 칙</p>	<p>부 칙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①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